

2026. 9.

중국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불인정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호텔이 중국 국외에서 제작·발행된 음반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음집협’)의 중국 「저작권법」 제45조상 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이 해외 제작·발행 음반에 대한 제45조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이 2007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에 가입하면서 제15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 음반제작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¹⁾

이 사건은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개정 「저작권법」 제45조의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이 섭외적 음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WPPT상 국민대우 원칙의 적용범위, WPPT 제15조 제1항 유보선언의 효력 및 해외 음반 레퍼토리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위임 입증의 쟁점이 되었다.

1) 사건의 경위

음집협은 광저우 소재 호텔 운영회사 및 그 난사 지점을 상대로, 호텔 로비·커피숍·헬스장 등에서 해외 제작·발행 음반 30곡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음집협은 2024년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의 이용에 관하여 2만4,000여 위안의 보상과 2,000위안의 권리구제비용, 그리고 이용 음반의 명칭·제작자·이용횟수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문제된 음반의 원제작자가 모두 외국 법인인 반면, 음집협이 제출한 인가 관련 증거상 권리자는 모두 중국 내 법인이어서 음집협이 주장하는 인가 주체가 실제 음반제작자와 다르다고 항변하였다. 아울러 문제된 음반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구매한 배경음악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였다. 1심 광둥성 광저우시 난사구인민법원은 음집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 광저우지식재산법원도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하였다.

1) 중국지식재산권보, 「音集协向酒店主张录音制品使用费被驳回——境外录音制品能否在我国主张获酬权?」, 2026. 8. 12.

2. 주요내용

1) 제45조 보상청구권과 해외 음반의 적용범위

중국 「저작권법」 제45조는 녹음제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공개전파하거나, 음향을 전달하는 기술설비를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방송하는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이는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허락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이용행위에 관하여 법정 보상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²⁾

법원은 이 사건 음반이 모두 외국 법인에 의해 중국 국외에서 제작·발행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이 그러한 음반에 대한 제45조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은 WPPT 가입 시 제15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으므로, 외국 음반제작자는 이 사건과 같은 공개전파 또는 음향전달설비에 의한 공개방송을 이유로 제45조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³⁾

2) WPPT 내국민대우 원칙의 제한

음집협은 WPPT 제4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근거로 외국 음반제작자에게도 제45조상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WPPT 제4조 제2항에 따라 내국민대우 의무는 다른 계약국이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선언을 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⁴⁾ 이에 따라 중국의 제15조 제1항 적용배제 선언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외국 음반제작자가 내국민대우 원칙만을 근거로 제45조의 보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권리위임 및 이용행위의 입증

법원은 아울러 음집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외 음반제작자로부터 중국 내 관계회사 등을 거쳐 음집협에 이르는 권리이전 또는 권리위임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해외 레퍼토리에 관하여 집중관리단체가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음반별 권리귀속과 권리위임의 연속성을

2)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제45조: “将录音制品用于有线或者无线公开传播, 或者通过传送声音的技术设备向公众公开播送的, 应当向录音制作者支付报酬.”

3) WPPT 제15조 제1항, 제3항: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제1항) “Any Contracting Party may, in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nly in respect of certain uses, or that it will limit their application in some other way, or that it will not apply these provisions at all.”(제3항)

4) WPPT 제4조 제1항, 제2항: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as defined in Article 3(2), the treatmen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exclusive rights specifically granted in this Treaty, and to the right to equitable remune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5 of this Treaty.”(제1항) “The oblig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another Contracting Party makes use of the reservations permitted by Article 15(3) of this Treaty.”(제2항)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법원은 호텔에서 실제로 재생된 녹음물이 음집협이 보상을 주장하는 이 사건 음반과 동일한 녹음저작물이라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해외 음반 레퍼토리에 관한 분쟁에서 권리귀속의 입증분 아니라, 실제 이용된 녹음저작물과 청구 대상 음반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도 별도로 요구됨을 보여준다.

또한 호텔 객실에 라디오 수신 기능을 갖춘 블루투스 스피커를 비치한 사실만으로는, 호텔이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공개전파하거나 음향전달 설비를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방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라디오 수신 기능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공용공간에서 음원을 능동적으로 재생·송출하는 경우를 구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중국의 WPPT 제15조 제1항 유보 선언이 외국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저작권법」 제45조는 영업장소에서의 배경음악 이용에 관한 보상청구의 주요 근거이지만, 중국 국외에서 제작·발행된 음반에 대해서는 제45조상 보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제작·발행된 K-pop 음반에 관하여 중국의 호텔·매장·피트니스센터 등을 상대로 제45조상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조약상 적용범위와 국내법 해석이라는 실체법상 제약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중국 내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권리행사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개별 음반별 권리귀속과 관리위임의 연속성을 문서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음반제작자의 제45조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음악저작물의 공연권·공중전달권, 실연자의 권리, 중국 내 별도 이용허락 또는 계약에 근거한 청구 가능성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내 해외 음반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음악저작권, 실연자권 및 음반제작자권을 구별하고, 이용 태양과 권리발생지에 따라 적용 법리와 라이선스 체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중국지식재산권보, 「音集协向酒店主张录音制品使用费被驳回——境外录音制品能否在我国主张获酬权?」, 2026. 8. 12.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제44조 및 제45조.
- WIPO,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arts. 4 and 15.
- WIPO, Accessio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PPT Treaty Notification No. 66.